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180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180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4 선고 2021가단50441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홍훈희

피고, 피항소인 1. E

2. F

3. G

4. H

5. I

6. J 주식회사

7. K 주식회사

8. L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산

담당변호사 송기출

변론 종결 2023. 5. 4.

판결 선고 2023. 6. 2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24. 선고 2021가단5044179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1) 피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M 사이에 2020. 8.자로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을 같은 목록 기재 각 취소 금액만큼 취소한다.
- 2) 피고들은 각자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별 각 취소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 원고 C에게 2,000만 원, 원고 D에게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고들과 소외 N 사이에 2020. 8.자로 체결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을 같은 목록 기재 각 취소 금액만큼 취소한다.
- 2) 피고들은 각자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별 각 취소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 원고 C에게 2,000만 원, 원고 D에게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3 목록 기재 피고별 각 이득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 원고 C에게 2,000만 원, 원고 D에게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5.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7.경 강원 양구군 ○ 일원 토지에 개발하는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분양하는 계약을 원고들과 각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각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의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10.경부터 2019. 4.경 사이에, 원고들 외에 피고들과도 이 사건 발전소를 분양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총 267,000,000원의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소외 회사는 2017. 6. 5. 이 사건 발전소 사업부지를 P로부터 9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P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리하여 P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N은 2020. 8. 26. P이 소외 회사에게 위약금을 공제한 2억 9,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2) 합의 사실을 알게 된 피고들은 N에게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자신들에게 양도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N은 2020. 8.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금 반환 채권 중 피고들의 분양대금 상당액인 합계 2억 6,7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해주었다. 피고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1299호로 P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 P이 피고들에게 위 양수금을 자진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발전소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외 회사가 원고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 대해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채무부담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N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채권양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며, P이 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채권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에 대하여 대금반환채권을 가진 자 및 그 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한 자가 N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권자 취소권행사에 있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한 것이어야 하는바, 원고들은 원고들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2017. 6. 5. 이 사건 발전소 사업 부지인 강원 양구군 ○ 외 22필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P, 매수인을 N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N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개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2) 이 사건 발전소 사업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른 매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법인 자체에서 토지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먼저 확보하는 차원에서 N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매도인에게 지급한 4억 원 중 1억 원은 소외 회사의 돈이 아닌 N 개인의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인인 N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외 회사의 사업진행이 어려워 2020. 8. 26. P 측 Q와 N은 이 사건 발전소 사업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P 측이 N과 소외 회사에게 이미 지급받은 4억 원 중 위약금을 공제한 2억 9,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가 기재된 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발전소 사업 부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는 Q와 N이 확인자로 서명하였는데, N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N이 개인의 지위가 아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반환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갑 제5호증의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다.

4) N은 2020. 8.경 피고들에게 2억 9,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2억 6,7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20. 9. 7.경 P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피고들과 N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P 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역시 소외 회사가 아닌 N 개인 명의로 이루어졌다. 원고들도 N으로부터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N이 P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N와 소외 회사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거나 N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거나 N이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가 N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의 채권자 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이 자기 명의로 이 사건 발전소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N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실은 소외 회사를 위한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어려웠던 회사를 대신해 우선 개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소외 회사가 N 대신 이 사건 발전소 사업부지의 매매대금 3억 원을 P 측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N 사이에 묵시적인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명의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명의수탁자인 N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발전소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소외 회사가 아니라 N이라면, 매수자금 중 3억 원을 N에게 제공한 소외 회사는 N에 대하여 ①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N에 대해 제공한 매매대금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② 명의신탁 관계가 아니라면 매매대금 3억 원 상당을 대여해준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며, ③ 대여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인 N이 소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자신의 매매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되어 횡령 내지 배임을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그 액수는 3억 원이다.

N은 소외 회사에 대해서 위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함에도 자신이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피고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무자력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원고들은 역시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소로써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N이 피고들에게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양도한 것은 자신의 고유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 것인바, 이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소멸됨으로서 소외 회사에 이익을 가져 온 것일 뿐만 아니라 N은 소외 회사를 위하여 대위 변제한 금액만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N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N이 피고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를 소외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N의 대위변제는 소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변제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N이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해 N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N이 한 대위변제가 소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변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3.의 가.항과 같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민법 제469조 제2항에 의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는데, N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들의 채권양도 요구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N의 대위변제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변제로서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N은 피고들에 대하여 양도한 채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N이 피고들에게 양도한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N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소외 회사와 N은 모두 무자력이므로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N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대위변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N의 대위변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 제2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고충정

판사지상목

판사박평균

별지